

정보통신 先導國,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서정욱 (전과학기술부 장관)

디지털기술로 촉진된 정보통신혁명,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國格

디지털기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온갖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암울했던 20세기 전반을 거쳐 후반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한민국은 고속 선진화에 몰입하여 체제우위를 입증했다. 초토화된 나라를 서둘러 재건하다 보니 한국인의 사고, 행동, 핏줄에는 “빨리빨리” 근성이 자연 발생했다. 이를 줄속의 병폐라 비하하며 한국인은 매사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다는 자타의 평을 받아 왔다. 물론, 겸허한 자기성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식 및 기술 집약 제품과 서비스로 교역 10대국의 반열에 접근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은 신속한 의사소통과 지식과 정보의 창출, 교환을 수단으로 생존할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가 21세기의 정보통신 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오히려 “빠름”의 근성에 “꼼꼼”하게 일을 챙기고 마무리하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의 슬기와 끈기를 융합하여 DNA화해

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교육 및 외국어 통달에 열을 올리고 지식을 재산으로 국부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1995년 정부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를 2002년 11월에 개통하여 일반시민이 발품을 팔지 않고, 서류 없이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도의 디지털 미디어가 소통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지식 역량 핵심 국가로 부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가 하면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의 시장을 그들이 신제품을 연구, 개발, 시험, 평가하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21세기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국민성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어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월등한 지식기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독창 기술이 도용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방어전략과 공격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이나 디지털 미디어들은 복제와 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Zero에 가깝기 때문에 Free Riding과 Moral Hazard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첨단기술이 연구인력 관리에 소홀하거나 취약한 보안 때문에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 인적 보안 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한편, 기술의 발전이 워낙 급속히 이루어지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울 만큼 시스템이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간의 협력과 제휴가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진입의 성패에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를 테면 휴대전화와 같은 간단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몇 종의 특허가 아닌 수십, 수백 종의 특허가 적용된다. Patent Pool이나 Cross Licensing 같은 용어들이 전혀 낯설은 일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협력과 제휴를 하지 않으면 해적판 모방기술이 출현하여 막대한 R&D투자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도 침해 당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에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과 제휴하고 거래하기를 원하는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인식하고 실행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정보통신의 국제적 표준과 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

세계의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이른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만들어 국가의 법규범이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동맹 관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

는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특허법 등 각종 지식재산 관련 법규들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 간에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조정과 중간관리를 위해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사실상의 표준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표준(De Jure Standards)을 신속하게 확립하여 산업계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법규범의 한계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입법기관이나 정책 집행기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 이보다는, 기술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의 대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확립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여타 법규범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세계 표준화 기구(ISO)는 실질적으로는 NGO단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ISO26000과 같이 여기서 제시되는 표준들이 국제무역의 룰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측의 Buyer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들이 ISO가 제시하는 기준 충족여부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의 국내법 저촉 여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영향력 있는 국내 원천기술 보유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식재산보호와 독과점규제의 조화

1990년대 이후 지식재산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은 세계 각국의 입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고, 1994년의 TRIPS와 같은 지식재산규범의 세계적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걸맞은 우리 정부의 위상정립, 정책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특정 산업계의 표준도 소속된 각 기업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이나 협력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와 같이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나 규모가 압도적이고 발전속도가 워낙 빨라 올해에 입법해도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절차와 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군다나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는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태생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1990년대 중반 Microsoft의 미국 Antitrust Law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예외적인 배타적 독점권을 특정 기업에게 부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충돌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지식재산 정책

지난 20여 년의 지식재산 발전과정을 추적하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로서 지식재산의 폭발적인 증가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1980년 미국에서는 소위 Bayh-Dole Act에 따라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연방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소들과 대학들이 특허출원과 Licensing을 통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해졌다. 그 후 활발한 특허출원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문적 순수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 특허보호 정책이 미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한 바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 역시 지식재산의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업들이 한 때는 무척 대고 대량으로 특허를 출원해둠으로써 유명무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들이 범람했었으나, 현재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 특허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 특정 기술이 해당 기업의 전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전시물이나 기념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등록유지비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즘에는 기업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특허를 R&D 투자 혹은 기술거래를 통해 획득하되,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른바 3국 특허 방식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별로 필요가 없거나 시장성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획득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회수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선진국 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거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유력한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술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대해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Pool 구축과 지식재산 정책의 조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정보통신 先導國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당당하게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또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거래 시장을 통하여 기업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 중심의 지식재산 Pool이 형성되어 국부 창출의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듯이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간해야 한다. 미국의 지식재산 장려정책,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했던 “知的財産立國”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적 총역량 및 지속성장 총동력은 과연 세계적인가? 특히 우리의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시스템의 지식창출 및 연구관리 능력이 과연 세계적인가? 우리 국민의 준법정신, 소비자로서의 공평성은 과연 세계적인가?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국가발전 전략에 조화롭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행정 및 기업경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다워야 한다.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